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4
----------	-------

제출년월일 : 2008년 6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현재 국민건강보건요양급여비용 기준 및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처치는 비보험으로 고가의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치과예방치료인 스켈링(치석제거)을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에 대하여 스켈링 진료 수가를 감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과진료 수가기준

구 분	기 준	수 가	비 고
1. 치석제거(스켈링)	1회	20,000원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에 대하여 치석제거(스켈링) 진료비 감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타수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하며 치석제거(스켈링) 수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수 가	비 고
1. 치석제거(스켈링)	1회	20,000원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단 치석제거(스켈링) 진료비는 장애등급 1-6급 장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타수가)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6조(기타수가)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하며 치석제 거(스켈링) 수가는 다음과 같이 한 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 준</th> <th style="width: 10%;">수 가</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 치석제거(스켈링)</td> <td>1회</td> <td>2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수 가	비 고	1. 치석제거(스켈링)	1회	20,000원	
구 분	기 준	수 가	비 고						
1. 치석제거(스켈링)	1회	20,000원							
<p>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p>3. ~ 4. (생략)</p>	<p>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단 치석 제거(스켈링) 진료비는 장애등급 1-6급 장애인 <p>3. ~ 4.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

[법률 제8423호, 일부개정 2007. 5. 11]

제14조 (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4.12.30>

지역보건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2호, 일부개정 2005. 6. 30]

제9조의2 (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694호, 일부개정 2007. 12. 14]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1999.12.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⑤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제9조 (비급여대상)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2001.12.31.]

[별표 2] <개정 2006.12.29>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탈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탈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라. 단순 코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삭제>
 -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

정술 및 교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사성옥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한다.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 나. 삭제 <2006.5.19>
 - 다.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 사. 및 아. 삭제 <2002.10.24>
 -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 차. 삭제 <2006.12.29>
 - 카.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 타.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 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 거.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사목, 제4호거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가. 운동요법·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타시군 스켈링 조례수가 현황

2008년 5월 현재

구 분	수 가	비 고
괴산군	20,000원	
음성군	30,000원	
증평군	20,000원	
부여군	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한 방문수가X4약	3,940원X4약= 15,760원
안동시	25,000원	
계룡시	방문당 일반진료수가X약	3,940원X6약= 23,640원
홍성군	30,000원	
광주광역시 남구	20,000원	
광주광역시 북구	20,000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00원	

제천시 공고 2008 - 648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국민건강보건요양급여비용 기준 및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처치는 비보험으로 고가의 시술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치과예방치료인 스켈링(치석제거)을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에 대하여 스켈링 진료 수가를 감면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치과진료 수가기준

구 분	기준	수 가	비 고
1. 치석제거(스켈링)	1회	20,000원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에 대하여 치석제거(스켈링) 진료비 감면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천시장(참조 : 건강증진팀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4086, FAX641-407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지방의료 기술주사보	건강증진팀 장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8-648호
3. 공고기간 : 2008. 05. 16 ~ 06. 05(20일간)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85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별지). 끝.